



제 433국회 (임시회)  
제 2차 교육위원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871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3.
3. 회 부 일 : 2026. 2. 19.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규정은 상담과 조사 업무의 겸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를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석사학위 취소 사실의 통지 등

#####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인권센터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하고,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19조의3(인권센터) ①·② (생략)                                           | 제19조의3(인권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한다.</u>             |
|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u> | <u>④ -----<br/>-----보조하여야 한다.</u>                                                |
| <u>④ (생략)</u>                                                   |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
| <u>&lt;신설&gt;</u>                                               | <u>제65조(과태료) ①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
|                                                                 |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

## 나. 검토의견

□ 현행 「고등교육법」 개정(2021. 3. 23.)을 통하여 의무화된 인권센터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sup>1)</sup>

이에 따라 인권센터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사·상담과 심의를 통한 ‘구제’임.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조사는 인권센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구제를 통한 학내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2020)에 따르면, 대학의 구성원이 대규모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센터에서는 대부분 1~2인의 인력이 상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조사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2)</sup>

- 이재용(2024)에 따르면, 2023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분석결과, 전체 240개 대학에서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 근무하는 인원은 평균 3.49명(남:1.40명, 여: 2.09명)이지만, 성 사안 피해 예방·대응(0.80명)과 상담 및 조사업무(0.83명)를 담당하는 인원은 합쳐서 1.63명에 불과하고,

---

1) 해당 규정은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도입됨.

2)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20. 11.

1.86명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성 사안 피해 예방·대응과 상담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실정임.<sup>3)</sup>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sup>4)</sup>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 각각 두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겸직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해당 인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함과 더불어 전문성이 제고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sup>5)</sup>

□ 한편, 인권센터의 업무 특성상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인권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대학과 전문대학이 국가 차원의 운영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있어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대학에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3) 이재용, 「대학 인권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통권93호), 2024.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5) 이재용, 「대학 인권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통권93호), 2024.

□ 이에 개정안은 인권센터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도록 하고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인권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센터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접근성과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개정안을 통해 인권센터는 상담과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문성·독립성이 강화되고, 사건 처리의 중립성이 확보됨으로써 피해자 지원이라는 인권기구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정에 대해 임의규정 형태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sup>6)</sup>

인권센터의 기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정도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6)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개정안은 안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상담 업무와 조사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7)</sup>

□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는 대학 규모, 지역 여건, 인력수급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실행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운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sup>8)</sup>

□ 교육부는 학생 수 등 대학마다 규모, 재정 상황과 실제 업무처리 건수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상담업무 담당자와 조사업무 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보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대학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88 |

7)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①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8) <참고 1. 관계기관 의견> 참조

## 참고 1

## 관계기관 의견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성결대, 강서대,<br>건국대,<br>동양미래대,<br>두원공과대,<br>서울여자간호대,<br>한양여자대<br>(신중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에서 상담 후 신고자의 자발적인 사건 접수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상담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상담과 조사 업무를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움</li> <li>· 구성원 수가 적어 인권침해 사건이 거의 없는 소규모 대학까지 상담 담당자와 조사 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검토가 필요하며, 상담인력과 조사인력을 각각 두도록 하려면 국가·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가 선행되어야 함</li> </ul> |
| 한국대학교육<br>협의회<br>(신중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규모, 지역 여건, 인력수급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실행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운영 등 우려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하도록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li> </ul>                                                                                                                       |
| 한국전문대학<br>교육협의회<br>(신중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수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학도 2인 이상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됨</li> <li>· 또한,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학 실정에 맞는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권에 대한 과잉규제로 보임</li> </ul>                                                                                          |
| 서울신학대,<br>영산대, 중앙대,<br>평택대, 전남대,<br>전북대,<br>대구경북과학<br>기술원<br>(수정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신학대) 상담인력과 조사인력을 각각 두도록 하되, 재학생 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대학은 예외적으로 인력 겸임을 허용하는 등 대학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임</li> <li>· (전남대) 인권센터 운영의 실질적 문제는 센터 인력이 다른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구조 등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한 최소 인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li> </ul>                                        |

|                   |                                                                                                                                                                                                                                                                                         |
|-------------------|-----------------------------------------------------------------------------------------------------------------------------------------------------------------------------------------------------------------------------------------------------------------------------------------|
|                   | <p>·(전북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대응 관련 업무 대응 상황 및 상담과 조사 업무의 업무 범위 불명확성, 대학 규모에 따른 기준 부재인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 상담 업무 담당자와 조사 업무 담당자의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함.</p> <p>·(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 규모와 인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담·조사 업무 겸직금지와 과태료 부과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보완해야 함</p> |
| 청암대, 영산대<br>(수용)  | <p>·(청암대) 법안 취지에 동의함</p> <p>·(영산대) 인권센터 업무 중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확보도 중요하므로 성희롱 전담인력 미배치 및 겸직 운영 시 과태료 부과액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할 필요</p>                                                                                                                                                                 |
| 전북특별자치도<br>(신중검토) | <p>·지자체의 대학 재정 보조 의무 규정은 지자체의 법정 사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p>                                                                                                                                                                                                                                  |